

다.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¹⁾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어있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국내기업 112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전유태²⁾의 조사를 보면 개략적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재산을 사업화 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역으로 해석하면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이 취약했던 분야에 대해 <표 2-6-9>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표 2-6-9> 정부가 지원해야할 분야에 대한 평점

정부가 지원해야할 과제	평균	순위
생산운전자금 지원	3.91	⑦
연구개발자금의 지원	4.16	③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	3.37	⑨
정부규제 완화	3.96	⑥
유사모방 제품의 제재	4.20	②
특허심사 및 심판기간 단축	4.39	①
특허제품 판로 확대	3.99	⑤
창업지원	3.47	⑧
기술정보제공	4.13	④

주: 5점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

자료원: 전유태,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 사업화 성공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완), 『발명특허』, 2월호., 1988

우선 기업들은 특허심사 및 심판기간의 단축, 유사 모방제품의 제재에 높은 점수들을 주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행사와 관련되어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기업들이 기술전략을 설정하고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술혁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또 지적재산권 정보를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적절히 활용하는 데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아무리 철저하게 갖추어져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1) 권용수·송위진, “제4장 제4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연구총서 98-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998.

2) 전유태,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 사업화 성공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완), 『발명특허』, 2월호., 1988

있는 민간부문의 능력이 없다면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활용한 기술혁신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중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를 설치한 기업과 관련인력은 1993년말 749개업체, 2059명, 1995년말 859개업체, 2183명, 1996년말 902개업체, 2395명에 이르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체 7만개중에서 비교해볼 때 매우 적은 수의 기업에 지적재산권 관련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관련인력도 평균 3명미만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의 활동은 기업내 특허출원 관련 행정 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기술전략의 수립과 기술 지식의 획득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아직 미비하다.

3) 특허청, 특허청연보, 1997